

**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**(제20조의9 관련)

1. 시설기준

가. 시설의 규모·구조 및 설비

강의실·사무실	1)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㎡ 이상이어야 한다. 2) 강의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전용강의실 또는 통합강의실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. 가) 전용강의실 (1) 이론강의: 1명당 1㎡ 이상 (2) 실기연습: 1명당 2㎡ 이상 나) 통합강의실: 1명당 2㎡ 이상 ※ 통합강의실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말한다.
교구 보관시설	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소방시설	「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,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한다.
그 밖의 시설	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채광·환기·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환경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.

2. 학습교구 기준

가. 인체모형,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.

나. 수시용품, 연습용품, 입관용품, 영좌용품, 상주용품은 10명당 1세트를 갖추는 것

- 1) 수시용품: 수시복, 수시포, 시상판 등
- 2) 연습용품: 수의 등
- 3) 입관용품: 관, 관보, 결관바 등
- 4) 영좌용품: 영정, 교의 등
- 5) 상주용품: 남상복, 여상복, 두건, 완장 등
- 6) 그 밖의 용품: 조등 등

다.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

3. 인력기준

구분		수	자격기준
교육기관의 장		1명	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
교수 요원	전임	교육인원 40명당 1명 이상	<p>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(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및 전임강사)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학·대학교에서 장레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(교양과목은 제외한다)을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</p> <p>나. 장레, 보건학,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</p> <p>다. 장레, 보건학,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</p> <p>라.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레 관련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
	외래	필요한 수	<p>가.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레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</p> <p>나. 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</p>

비고

1. 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2.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구분되어야 한다.